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명시 및 육아휴직 급여액 규정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2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고용보험사업 비용의 일반회계 부담 비율 규정 등	3
2. 육아휴직 급여액 규정 등	6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4일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
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
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Ⅲ. 검토의견

1. 고용보험사업 비용의 일반회계 부담 비율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4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u>비용의 일부를</u>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 ----- <u>비용 중 100분의 14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과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사업의 지급 대상·수준 등이 확대 추세에 있는바, 주요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4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법 제75조²⁾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제77조의4·제77조의9³⁾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고용보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지출을 도모한다는 데에 입법적 의의가 있음.

1) '24년 일반회계 전입금: 4,000억원(2024년 고용보험 수입계획액(23조4천억원)의 1.7%)

2)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1·2호 생략)

3)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강화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바,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2. 육아휴직 급여액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

⑤ (생략)	<u>상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⁴⁾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하면서,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⁵⁾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의견이 있음.

4)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5)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⁶⁾ 이상의 금액으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을 통해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데에 입법적 의의가 있어 보임.

한편, 안 제70조제5항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⁷⁾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6.19)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상향을 이미 추진중('25.1월 시행)에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분	현행	개정		
	1~12개월	1~3개월	4~6개월	7개월~
급여액 상한	15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통상임금	80%	100%		80%

자료: 고용노동부

6) '24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223만원

7)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양육을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상한액: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 6개월 차엔 450만원)

문 의 처
02)6788-5539